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8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그 재원 조성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업 관련 수입금(안 제4조)

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안 제5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19. 8.14. ~ 2019. 9. 3,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 안 제4조에서는 세입으로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경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18. 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

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③ 제2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